

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보고서
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 해지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.

1. 일반사항

1. 감사인명	
2. 감사인 고유번호	
3. 회사명	
4. 회사 고유번호	
5. 법인 구분	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/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/ 코넥스시장주권상장법인 / 사업보고서제출비상장주식회사 /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비상장주식회사 / 기타 비상장주식회사 / 유한회사
5-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	
5-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	
6. 감사계약 해지일자	yyyy - mm - dd
7. 감사계약 해지일이 속한 사업연도	제 기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
8.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해지일이 속한 감사차수	▼ 1년차 / 2년차 / 3년차

기재상의 주의

- 5-1. 금융회사란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,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을 말한다.
- 5-2.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,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, 그 외 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.
- 8.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 감사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감사차수가 1년차, 2년차 또는 3년차인지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재한다.

2.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관련 사항

1.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유	
2. 감사계약 해지에 대한 해당 회사의 의견	
3. 제출할 문서 첨부	
3-1. 감사계약 해지 공문	
3-2. 해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	

기재상의 주의

- 3-1.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. 동 공문에는 감사인명, 대표이사 직인 및 "당 감사인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 등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."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.
- 3-2. 감사인이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한다.